제298회 정례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강동길 의원 대표발의)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강동길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□ 기획경제위원회 선배 · 동료 위원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강동길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,
9명의 동료의원들께서 함께 발의해주신
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동 개정안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과
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으로 이원화된 벤처투자 제도를
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로 통합하여 반영하고,
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즉시 반영해
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
자치법규 접근성과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
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